

분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 번영로더샵 지주택 일반분양을 위한**

중도금대출 안내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별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입한 분양계약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구입자금 보증서 발급 가능한 분양계약자 - 중도금대출 기 보증건수 본건 포함 세대당 2건 이하 및 개인당 5억원 이하 ※아래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재 중인 분양계약자 ☞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당행의 특수채권 등으로 내규상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대출한도	• 각 세대별 총분양대금의 60%	대출기간	• 2023. 02. 20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COFIX(6개월) + 1.65% ※ 8월28일자 신규COFIX(6개월): 0.81%, 대출실행일 기준 적용되는 변동금리로 실제적용금리와 상이 할 수 있음. ※ 대출의 이자는 시행사 부담이나, 지정입주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차주 부담입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이자	• 시행사 선부담(후불제)	HUG보증료	• 시행사 선부담(후불제)								
고객부담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은행과 고객님의 각 50%씩 부담)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출금액</th> <th>50백만원 이하</th> <th>1억원 이하</th> <th>1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고객 부담분</td> <td>면제</td> <td>35,000원</td> <td>75,000원</td> </tr> </tbody> </table>			대출금액	50백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고객 부담분	면제	35,000원	75,000원
	대출금액	50백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고객 부담분	면제	35,000원	7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접수시 선납비용, 반드시 현금으로 지참하여 납입가능하며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불가 											
필수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10% 이상 납입영수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모두 각1 통(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표시 불가) ※ 본인과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씩 준비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T 1577-1000)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5. 소득증빙서류(아래 해당하는 유형중에 2가 필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영수증) ※ 모든 서류는 회사 도장 날인 되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본) • 연금소득자: 지급기관의 연금수급확인서(최근 1년) • 기타소득자(프리랜서, 보험모집인, 일용직 등):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세무서 발행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본인 신용(체크)카드연말정산용 월별사용내역 집계표(201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 ※ 분양계약자 공동 명의자인 경우 분양계약자 전원 방문 및 필수서류 전원 준비 ※ 보증료 할인 관련 사항 배면 참조 										

■ 유의사항

- 본 안내장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규정, 감독기관 지침,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 제한자를 포함하여 은행의 심사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 강화,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대출한도 등의 대출조건이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 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아파트 분양 받은 계약자(입주예정 고객)님의 중도금대출 상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0-G-79
 심의일자 : 2020.01.20
 유효기간 : 2021.07.31

대출취급점 : BNK경남은행 집단대지원팀
문의전화 : 055-290-9222, 9223
055-290-9218, 9219

□ 보증료 할인대상

(1) 사회배려계층 :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입니다.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4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 증서, 의사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6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

□ 보증료를 할인 적용시 제출서류

대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 및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 -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수·구청장이 발급)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